

부산인권정책포럼

제3차 포럼

‘차별 없는 인권도시 부산 만들기’ 한일 포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神奈川県 川崎市)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 사례 검토

일 시 : 2020년 8월 25일 (화) 15:00~17:00

장 소 : 부산광역시 의회 2층 대회의실

주 최 :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도시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후 원 : 부산지역공공노조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광역시

진행

시 간	내 용
1부 (한국) / 한국어로 진행 + 수어통역	
15:00~15:10 (10')	▶개회 (사회 : 박용민,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여는 인사 :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축하 인사 :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5:10~15:20 (10')	▶활동 영상보기 •2019.12.12. 조례 제정 영상 / 마이니치 신문사 (毎日新聞) •2020.07.01. 조례 전면 실시 뉴스 / YTN 뉴스
15:20~16:00 각 20분 (40')	▶주제발표 (영상으로 진행) “공생과 협력,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발표1. 최강이자(崔江以子), 재일동포3세,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발표2.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 외국인인권법연락회
2부 (한국•일본) / 일본어 통역 + 수어 통역	
16:00~16:50 (50')	▶일본 발제자 인사 ▶질의응답
16:50~17:00 (1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포럼을 개최하며	4
-----------------------	---

주제발표

1. 차별없는 가와사키—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요구하며, 시민, 자자체, 시의회가 함께 / 최강이자(崔江以子), 재일동포 3세,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5
2. 가와사키시(川崎市)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의 의의 /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 외국인인권법연락회	15

참고자료

•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	21
•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일본의 약칭 해소법)	28
• 평등 및 차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안)	31
• 부산인권정책포럼 소개	43
•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규정	46
• 인권도시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개	48

포럼을 개최하며

최근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발언들로 인한 인권침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부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번 포럼에서는 2019년 12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일동포 집주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사쿠라모토를 덮쳐 왔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시민들과 지자체,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하고, 실천한 결과이자 성과여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포럼이 부산에서도,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시민들과 시,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부산시와 가와사키시가 서로 연대하고, 한국과 일본의 평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연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했다가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어 더 이상 미루기보다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신 최강이자 선생님과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님, 영상자료를 제공해주신 고토 요시아(後藤由耶) 기자님, 비대면 포럼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남원철님, 번역과 자막작업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통을 맡아주신 이혜진님, 이번 포럼을 함께 열어주신 최영아 의원님을 비롯한 인권도시부산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25일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차별없는 가와사키’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요구하며, 시민, 지자체, 시의회가 함께¹⁾

최강이자(崔江以子), 재일동포3세,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P1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에는 헤이트 스피치²⁾(Hate speech, 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표현)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벌칙을 첨부하여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력,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2

제가 살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게이힌(京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차 대전 중 많은 재일코리안³⁾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왔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정착해서 재일코리안이 모여 사는 집주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P3

전쟁 후 혹독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재일동포 1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 목숨을 부지하고 일본인들과 함께 살면서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습니

1) 이 자료는 포럼 발제 PPT 속에 진행되는 최강이자 님의 발표내용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P1 ~ P69로 표기된 번호는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2)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한국어로 ‘혐오표현’으로 번역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 헤이트 데모(Hate Demonstration, 혐오 집회), 헤이트 가두시위, 헤이트 단체 등과 같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음으로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 조선적 보유자, 일본국 국적자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단어라 재일동포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재일코리안으로 씁니다.

다.

P4

우리 지역은 재일코리안을 비롯하여 재일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사는 마을로, 다문화공생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지역 공립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조선의 풍물놀이를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P5

그리고 이것은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졸업하기 전, 재일동포 1세 할머니에게 김치 담는 방법을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P6

교육활동이나 지역 활동에서 ‘서로의 차이는 풍요로움이다’ 라고 배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에 있는 조선학교가 일본의 여러 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P7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P8

여기에 헤이트 데모(혐오 집회)가 덮쳐왔습니다.

P9, 10

가와사키시에서는 2013년부터 차별단체들의 헤이트 데모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와사키역 앞에서 “조선인은 죽어라”, “죽여라”, “조선인을 내쫓아라” 라는 끔찍한 시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P11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1월에는 우리 지역 사쿠라모토(桜本)에도 이 헤이트 데모가 덮쳐왔습니다.

P12, 13

“조선인을 죽여라”, “내쫓아라”, “조선인이 내뿜는 공기는 더럽다, 숨 쉬지 마

라” 이렇게 외치는 시위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덮쳐옵니다.

P14

‘우리 동네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플랭카드가 마을에 내걸리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대한 항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P15

“마을을 지켜라! ”, “사쿠라모토를 지켜라! ”, “아이들을 지켜라! ”, “할머니들을 보호하자! ”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역 사람들이 항의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P16

그러나 이 시위는 2016년 1월에도 우리를 향해 예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차별로부터 시가 시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전 가와사키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재일동포 1세 할머니들이 “왜 차별 하느냐”, “어째서 자식이나 손자 세대까지도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라며 상처 입은 마음을 이야기하자, 참가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P17

2016년 1월, 두 번째 큰 시위가 다시 우리 지역을 덮쳤습니다.

P18

공원 입구에서 할머니들이 “차별을 그만두라!” 고 소리쳤고,

P19

우리도 “차별을 그만두고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외쳤지만,

P20

중단하지 않고 시위대는 경찰의 보호 아래 시에서 허가한 공원을 거쳐, 도로를 거쳐

P21

헤이트 데모가 사쿠라모토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P22

참으로 괴롭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P23

이때도 시민들이 방패가 되어 “사쿠라모토를 지켜라!”, “인권피해로부터 제일코리안을 지켜라!”, “우리 사회를 지켜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P24

우리는 이 끔찍한 시위 앞에서 정말 믿을 수 없고, 서글펐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P25

그래서 우리는 모로오카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부에 인권침해 피해신고를 하고 구제도 요청했습니다.

P26

이 요청이 정부에 전달되어 3월 22일, 제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그 피해가 어떠했는지를.

P27

그 다음 주, 이번에는 국회에서 우리 마을 사쿠라모토에 시찰을 나왔습니다.

P28

우리 마을을 함께 걸으며,

P29

그리고 우리 마을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P30

국회에서 가와사키의 피해를 입법 취지로써 4월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헤이트스피치 해소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들의 피해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P31

이 법안은 5월에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중의원으로 보내지고, 이 입법과정에 우리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와사키시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P32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헤이트 데모가 예고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 광역지자체인 가나가와현, 그리고 가와사키시의회와 함께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시위 중 도로사용을 불허하도록 하는 요청행동 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P33

그리고 5월 31일, 가와사키시 시장이 헤이트 데모의 출발지인 공원을 헤이트 단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불허를 결정했습니다. 6월 2일에는 법원에서 우리 마을 사쿠라모토 반경 500m에서 ‘헤이트 데모 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3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P34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가와사키 시의회도 시를 상대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헤이트 데모를 저지하자’는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P35

그리고 가와사키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사용을 불허하였으며,

P36

법원에서는 데모 가처분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P37, 38, 39

가와사키시는 해소법 제정에 따라 가와사키시의 인권정책추진협의회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가와사키시에 3개의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두 번째는 인터넷상의 대책, 세 번째는 제정해야 할 조례 검토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P40, 41

지금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던 헤이트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법과 가이드라인 망을 피해 가두집회 등을 계속하여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계속되었습니다.

P42, 43

또 선거활동 명목으로 선거 활동 중에 헤이트스피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P44

게다가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헤이트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P45

저에 대해서는 “너의 조국에 가서 살아라” 는 동영상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P46

끔찍한 증오 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P47

인터넷 상의 피해는,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제 사진에 바퀴벌레와 구더기 그림 등을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48, 49

진짜 바퀴벌레의 시체나 나방의 시체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의 피해는 인터넷에 멈추지 않고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P50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률(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생겨도 혐오•증오가 멈추지 않는다”,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을 지켜주기 바란다” 라는, ‘가와사키시 힘내라!’ 는 목소리를 높였고, 가와사키시를 응원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P51

거리 활동을 통해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시를 응원했습니다.

P52

또 시민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회에 걸친 시민학습회를 개최하고, 매회 200명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인터넷과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타도시의 정책에 대하여도 공부하였으며, 도쿄 변호사회에 가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P53

그 배움의 힘으로, 제대로 차별을 멈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요구하였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정리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응원의 마음을 담은 러브레터로 시에 전달했습니다.

P54

구체적으로 차별을 멈추기 위해서는, 벌칙을 마련하여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담보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시에 전달하고 여러 차례 대화하였습니다.

P55

그리고 2019년 6월, 가와사키 시장은 큰 결단을 하고 의회에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P56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 조례」, 이 조례는 처음으로 차별을 범죄로 간주하였습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권고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검찰과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50만 엔(한화 약 5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시가 확산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57

이 조례의 초안을 의회에서 설명했던 시의 직원들은 “이제는 교육이나 계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벌칙규정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겠다” 며, 시가 시민의 방패가 되어 시민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시의회에서 밝혔습니다.

P58, 59

시민들은 시의 이런 결의를 응원하며, 이 조례가 정말로 제정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P60

조례 초안에 대해 시에서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⁴⁾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1세 할머니가 전쟁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글을 읽고 쓰지는 못하셨지만, 노령에도 불구하고 문해반에서 읽고 쓰기를 배우고, 배운 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이 조례에 대한 기대를 썼습니다.

P61

한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 70년간 일본에서 살아왔지만, 이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져, “이제야 가와사키 시민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P62

퍼블릭 코멘트는 역대 최고인 18,000개가 올라왔으며,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P63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P64

이 조례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계파가 찬성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구 150만 명의 도시 가와사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바로 시민 모두의 의견으로 「차별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P65

본 조례는 제2장에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제5조에서 모든 차별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는 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시장과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이다.

P66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수단과 유형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P67

별칙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헤이트 스피치 1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심사회에 자문을 구하여 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제 그만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 권고를 받은 인물이나 단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면 시장은 같은 방법으로 심사회에 의견을 들은 다음 ‘이제 그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동일한 헤이트 스피치가 동일 인물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번에는 명령위반으로 우선적으로 이름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면 최고 5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3단계 방법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름을 공개하거나 고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시장이 권고나 명령을 내리는 것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억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제들을 검증해 나가며 조례의 운영을 시민들도 잘 지켜보면서 다듬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P68

2020년 7월 1일, 이 조례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그 직후 7월 12일 헤이트 스피치 단체가 신속하게 조례에 항의하는 가두시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와 가와사키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의 억제효과와 시의 모니터링 억제효과로 지금까지 헤이트 단체가 해왔던 “죽어라, 죽여라”와 같은 명백한 헤이트스피치는 볼 수 없었습니다. 7월 1일, 조례가 전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시민들과 함께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시민과 행정 모두 가와사키에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P69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가와사키 조례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 참고 : 한국에 보도된 뉴스 자료들 >

한국일보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A22면 사람들

“가와사키 조례로 이미 노골적 혐한 발언 억제 효과”

조례 제정 주도 재일동포 최강이자 “차별만은 안돼” 160개 단체 도움

“차별이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더 나쁘고 가끔 일어난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을 주도한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47·사진)씨는 지난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차별의 존재만으로도 인권침해가 발생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와사키 조례에 대해 “시가 방패가 되어 차별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5년 9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법 추진 당시 2차 대전을 경험한 재일한국인 할머니 40여명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를 타깃 삼아 극우단체들은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1월 재일한국인의 터전인 사쿠라모토에 쳐들어와 “죽어라” “일본이 싫으면 나가라” “공기가 오염되니 숨쉬지도 말라” 등을 외치며 위협한 것이 조례 제정에 나선 계기였다.

최씨는 “당시엔 이를 막을 규정이 없어 시 측으로부터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들었다”면서 “이번 조례는 차별 운동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극우단체의 언행을 감시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차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



다. 이달 1일 조례 시행 후 처음 열린 12일 극우단체 시위에서는 차별을 의식한 듯 재일한국인을 겨냥해 “죽어라” “바퀴벌레” 등의 노골적인 혐오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조례 제정에는 ‘차별 반대’에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들의 도움이 있었다. 최씨 등은 2016년 1월 시민네트워크 결성 후 20차례에 걸쳐 매회 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제인권법, 표현의 자유 등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같은 해 3월 참의원 법무위에서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증언했고, 5월 정부 차원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을 끌어냈다. 하지만 차별 규정이 없는 한계로 인해 차별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민네트워크는 끈질기게 시와 시의회를 설득하며 차별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차별 행위에 최고 50만엔(약 540

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시와 시의회를 움직인 것은 ‘울 가와사키’라 부르는 시민들의 힘이었다. 최씨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차별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160여개 단체들은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에는 하나였고 이것이 차별에 맞서는 동력이었다.

최씨는 “시민들과 시 당국, 시의회가 하나가 돼 조례를 만든 가와사키 모델은 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와사키=김화경 특파원

YTN 뉴스

https://www.ytn.co.kr/_ln/0134_202007021000184182

聯合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12800073?input=1195m>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314200002302>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26481.html>

가와사키시(川崎市)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조례의 의의

모로오카 야스코 (師岡康子), 변호사,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안녕하세요. 변호사 모로오카 야스코입니다. 제 이야기 앞부분은 가와사키시 조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조례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모든 차별철폐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을 담은 인권조례로서의 부분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말과 행동」 즉 외국출신자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차별금지법적 부분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법적 부분은 전문,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서술되어 있고, 전문에는 입법사실 - 왜 이 조약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서술하고 있고, 여기에서 외국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말과 행동, 즉 헤이트 스피치 문제와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와 같이 국제인권제조약도 내걸고 있어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제1장과 제2장에 가와사키시가 어떤 책무가 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모든 차별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를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인권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계발활동을 추진하고, 정보수집·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시장의 자문기구로 「인권존중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부당한 차별」로, 「인종, 국적, 민족, 신념,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

성, 출신, 장애 그 외 사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로 정의하고, 그 중에 「부당한 차별적 처우」, 예를 들면 국적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제3장 이하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을 비롯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시의 책무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기관의 하나로 새롭게 ‘차별방지대책등심사회’ (이하 심사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조례에는 외국출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말과 행동의 정의로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말과 행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약칭 「해소법」)의 제2조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고,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첨가하여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장소에 대한 제한으로, 「시의 구역 내 도로, 공원, 광장 그 외 공공장소에 있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인터넷 상의 헤이트스피치는 금지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단도 세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성기를 사용하는 등 이른바 헤이트 데모나 헤이트 가두시위에서 행해지는 큰 소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 대상도, 해소법에서는 자국 외 출신자 일반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나라 또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음은 행위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살고 있는 지역에서 퇴거하라는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고지하는 것」, 이른바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고지하는 것」으로 위협형으로 해소법과 동일합니다.

셋째, 「사람 이외의 것에 비유하는 등 크게 모욕하는 것」으로 모욕형입니다.

이 금지 조항을 위반 한 사람이 다시 재차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가 「권고」를 하고, 그럼에도 두 번째 행한 자가 세 번째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고 3회를 행한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 외,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권고와 명령에 앞서 전문적 제3자 기관인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 공표하기 전에 발언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행정의 수장(시장)이 독단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한 후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형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시가 대처하는 대상으로는 되어있어 시민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심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산방지조치, 즉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조례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의의는 형사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법제도에서 차별을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별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이 아니라 차별적 말과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적 말과 행동에 대해 꽤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차별 중에서도, 민족차별 등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는커녕 차별철폐정책도 없고, 담당부처도 없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차별적 취급(처우)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는 차별이 있을 경우,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상 불법행위라는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만, 차별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은 나가라’와 같은 말과 행동은 법률 상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어서 법적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온 셈입니다.

그에 반해 2016년 처음으로 인종차별 해소를 목표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소법에는 금지규정도, 처벌규정도 없어, 법 제정 후 헤이트 데모는 줄어들었지만 그 외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 등은 감소하지 않고, 헤이트스피치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일코리안들의 집중거주지구가 있는 가와사키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 후에도 헤이트 데모와 헤이트 가두선전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형사규제의 의의는, 예를 들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차별적 말과 행동이 범죄유형의 하나가 되었고, 차별은 지금까지 위법이 아니었지만 이번 조례에 의해 위법이고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살인 등과 동일하게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시행 전에는 헤이트 데모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어, 항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자로 경찰에 쫓기고, 그 중 다수는 연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소법을 거치면서 헤이트 데모는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되었고, 특히 이번 조례에 의해 범죄가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차별에 대해 형사규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인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지만, 최고금액이 5만 엔(한화 약 55만원) 이하로 낮아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 억제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책임자가 독단으로 결정하지만, 형사처분은 시가 고발 한 후 검찰에서 확인하여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적고 공정한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형사규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찰, 검찰, 법원은 차별문제를 회피하고 차별에 대한 판단을 피해왔지만, 이번 조례에서 형사규제의 도입으로 경찰, 검찰, 법원은 각각 그 말과 행동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규제 전체를 바꾸는 대단히 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가와사키시 만 대상이지만, 경찰, 검찰, 법원은 전국 조직으로 인사이동도 있어 가와사키 담당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차별에 대해 교육하고 차별여부를 판단 할 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조례이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인권과 특히 법률가 중에서는 형사규제가 위헌이 아닌지, 남용은 아니냐는 염려도 크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 한 바와 같이, 헤이트 스피치는 3회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제3자 기관이 심사하는 구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말과 행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한하여 차별억제의 실효성 관점에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는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절차도 공정하게 빈틈없이 발언자의 의견을 듣도록 잘 정리된 것으로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사규제를 성립시켰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의 신중한 구조는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범죄는 일본도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는 형사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심사 때마다 형사규제를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전문에 국제인권조약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국제인권 상의 의무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형사규제가 없는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미국도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 선동에 한정하고 있지만 형사규제가 있고, 일본도 드디어 일본의 일부 가와사키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세 번째 의의는, 차별을 없애고자 한 투쟁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최강이자 선생님으로부터 소개가 있었지만, 헤이트스피치로 가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여 그것을 주위의 시민들이 지지하고 큰 노력의 결과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헤이트 스피치가 멈추지 않아 가와사키시 당국과 시의회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자 여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는 금지규정도 별칙규정도 없는 상태이므로, 가와사키시도 별칙이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저함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역시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용기를 내어 처벌이 있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을 포함한 시의회도 헤이트 스피치에 의한 피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 전체에서 보면, 조선학교 배제라든지 공무원의 국적조항 등 일본 정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 특히 구 식민지출신 시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와사키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민당과 공명당을 포함한 모든 시의회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없는 형사규제까지 만든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퍼져 일본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용기를 일본의 모든 시민들에게 전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와사키는 전체 가와사키의 모든 의원의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다른 지역에도 아직 남아있는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는 물론 헤이트 데모, 헤이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장소에 한해, 적어도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와사키시의 조례가 시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된 만큼 그 실적을 바탕으로 넓혀나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와사키시의 조례안이 나온 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같은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에서도 일본 제1여당 선거에 이름을 빌린 헤이트 가두시위가 있었으므로 사가미하라시 시장은 가와사키시의 조례를 참고로 반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만들어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반차별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 형사처벌이 포함된 조례를 만든 것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발효되었지만, 아무래도 실효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해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 계몽만으로는 헤이트스피치가 멈추지 않음으로 벌칙을 포함한 것은 시 당국이 시의회에서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국가의 법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는 조례입니다만, 외국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와사키시 조례제정이 한국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조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큰 과제입니다. 운용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불충분하다면 바꿔 나가야합니다. 우리들의 대응은 조례를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향해 막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함께 대처하여 차별을 없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가와사키시 차별이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 조례

가와사키시는 일본국 헌법 및 일본국이 체결한 인권에 관한 조약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부당한 차별해소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시책을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착실히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부당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인터넷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의 인권과제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시, 시민 및 사업자가 협력하고 부당한 차별의 해소와 인권과제의 해결을 향하여 인권존중의 이념의 보급을 한층 더 추진하여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와사키시는 모든 시민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생생하게 살 수 있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시,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인권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를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용어의 의미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부당한 차별” 인종, 국적, 민족, 신조,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자인(性自認), 출신, 장애 그 밖에 사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말한다.
- (2)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

한다.

제2장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 추진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시민 및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민족, 신조,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자인, 출신, 장애 그 밖에 사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6조(인권시책추진기본계획) ① 시장은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인권시책추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인권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목표
2. 인권에 관한 기본적 시책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가와사키시 인권존중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의견의 청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한 때에는 이것을 공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조(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시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존중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인권교육 및 인권계발(啓發)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47호) 제2조에 규정한 인권교육을 말한다) 및 인권계발 (동조에 규정한 인권계발을 말한다)를 추진한다.

제8조(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에 관한 지원) 시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차별 그 밖에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등과 연계하고 상담 실시, 정보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시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연구를 한다.

제10조(인권존중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① 제6조제3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인권존중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인권존중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12인 이내로 조직한다.

③ 위원은 학식경험자, 관계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⑥ 제3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임시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심의가 종료될 때는 해촉된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전(前)각 항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책의 추진

제11조(이 장의 취지) 시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 실정에 응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도모한다.

제12조(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금지) 모든 사람은 시의 구역 내의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휴대용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 간판, 플랭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하고, 또는 배라, 팸플릿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함으로써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특정하고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임을 이유로 다음에 계기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행하고 또는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국 외 출신자(법 제2조에 규정한 본국 외 출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거주하는 지역에서 퇴거시킬 것을 선동(煽動)하고 또는 고지(告知)하는 것

본국 외 출신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가할 것을 선동

하고 또는 고지하는 것

본국 외 출신자를 인간 이외의 것으로 비유하는 등 현저하게 모욕하는 것

제13조(권고)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제12조 각호에 계기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행한 자 또는 행하게 한 자가 다시 당해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국가 또는 지역과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임을 이유로 한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제12조 각호에 계기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하 “동일 이유 차별적 언동”이라 한다)을 행하고 또는 행하게 하는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지역을 정하고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날부터 6개월 동일 이유 차별적 언동을 행하고 또는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가와사키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미리 그 의견을 청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명령)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가 다시 동일 이유 차별적 언동을 행하고 또는 행하는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지역을 정하고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날부터 6개월, 동일 이유 차별적 언동을 행하고 또는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가와사키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미리 그 의견을 청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표)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아울러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한 단체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명령의 내용,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가와사키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청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해 공표될 자에게 그 이유를 통

지하고 그 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의 이용허가 등의 기준) 시장은 공공시설(시가 설치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지는 우려가 있을 경우의 공공시설의 이용허가 및 그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7조(인터넷 표현활동에 관한 확산 방지 조치 및 공표) ① 시장은 인터넷 그 밖에도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표현활동(다른 표현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그림, 영상 등을 불특정다수의 자에 의한 열람 또는 시청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인터넷 표현활동”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이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인터넷 표현활동에 관한 표현의 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의 구역 내에서 행해진 인터넷 표현활동

시의 구역 외에서 행해진 인터넷 표현활동(시의 구역 외에서 행해진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현의 내용이 특정의 시민 등(시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 재근하는 자, 재학하는 자 그 밖에 시에 관계된 자로서 규칙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되는 인터넷 표현활동

가에 게시하는 인터넷 표현활동 이외의 인터넷 표현활동으로 시의 구역 내에서 행해진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내용을 시의 구역 내로 확산하는 것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당해 인터넷 표현활동이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취지, 당해 인터넷 표현활동에 관한 내용의 개요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한다. 단 이를 공표함에 따라 제11조의 취지를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공표는 시민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공표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가와 사키시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차별방지대책등심사회) ①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하기위하여 가와사키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이하 “심사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사회는 위원 5인 이내로 조직한다.

③ 위원은 학식경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10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심사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조(심사회의 조사 심의 수속) ① 심사회는 시장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표현활동에 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행한 시민들에게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그가 아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 그밖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회는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혹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의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또는 제1항의 인터넷 표현활동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명하는 위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배려) 이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그 밖에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잡칙

제21조 (보고 및 질문) ① 시장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2조 각호에 계기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행한 혹은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혹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또는 그 직원에게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는 직원은 그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22조 (위임)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이 조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①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한 단체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혹은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혹은 사람에 대하여도 동조의 형을 과한다.

②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020년 4월 1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 및 제5장의 규정 2020년 7월 1일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 당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가와사키시 인권시책추진 기본계획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訳注: 「1.」「①」などの使用法が日本の条例と異なるが、韓国の条例の様式に合わせたものである。また、法務省は「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仮訳について、「本邦外」を「本국 외(本国外)」、「取組」を「대책(対策)」と訳している(<http://www.moj.go.jp/content/001199585.pdf>.)。このため、本条例の翻訳もこれに従った。なお、韓国と日本は同じ漢字圏であるが、韓国で「本邦外(本邦外)」、「취조(取組)」という漢字語は使用しない。一般的には、「본방」は「本放送」の略語として、「취조」は「取り調べ」という意味で使用する。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略称「解消法」)

**‘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소법’ / 가번역)**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제2장 기본적 시책(제5조 - 제7조)

부칙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져,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 큰 고통을 겪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애당초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 심화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이해와 협력을 얻고,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고

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국가 등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기본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오로지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이하, 본 조에서 ‘본국 외 출신자’라 함)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또는 본국 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출신임을 이유로 본국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국민은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상담체제의 정비)

제5조. 국가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교육의 강화 등)

제6조. 국가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계발활동 등)

제7조. 국가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 관련 검토)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병력(病歷)”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5.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 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에 따른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수학 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8.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0.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자

11.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제3조(차별의 개념) ①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①대통령은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
4.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제9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1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제12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후생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 또는 변경하지 않는 행위

제15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정년·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제19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토지·주거시설의 소유·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공급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서비스」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이하 이 조에서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6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28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제29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절차·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①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1조(구제의 신청 등) ①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

제32조(소송지원) ①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번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⑤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35조(입증책임의 배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공개 의무) ①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 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제34조 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인권정책포럼

I 취지와 목적

□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II 경과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 운영위원장)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운영부위원장)
-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 간사)
- 김기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지부)
-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 2020년 3월 26일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2차 포럼 결정 및 운영규정 초안 확정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2차 포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에 대한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드리는 의견서 전달 :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6월 29일, 부산시로부터 회신 받음
- 8월 3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께 부산인권정책포럼 제안 관련 부산시 회신에 대한 검토의견서 전달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III 함께 하는 이들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 부산, 이주민문화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Ⅳ

4~5차 포럼 (안)

4차 포럼 : 부산시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검토하다

- ▶ 일시 : 11월 4일(수) 15:00
- ▶ 장소 :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 ▶ 내용 : 부산지역 인권행정 추진체계 주요 현안
 - 성평등 추진체계의 쟁점과 대안 — 성평등추진단 위상과 역할
 - 인권행정 추진체계의 쟁점과 대안 —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5차 포럼 :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 일시 : 12월 10일(목) 15:00
- ▶ 장소 : 부산시의회 4층 이음홀
- ▶ 내용 : 2020년 인권의 핵심주제였던 코로나19를 돌아보다
칭찬할 사람, 고생한 사람, 빛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등 3인을 초대
2020년 <부산인권정책포럼>을 돌아보다 & 2021년을 준비하다
- ▶ 2020 부산시 인권주간 행사 중 진행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규정

제정일 2020. 4. 21

제1조 (명칭) 이 포럼은 부산인권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Busan Human Rights Policy Forum” 로 또는 약칭 “BHRPF” 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포럼은 부산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책제안,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의 인권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기별 정례포럼
2. 인권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3. 부산인권현안과 관련된 정책 검토 및 제안
4. 부산지역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제4조 (회원의 자격)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찬성하며 포럼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기관회원은 법인 혹은 단체를 말하며 기관회원은 그 임직원 중 1인 이상의 기관등록회원을 지명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포럼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혹은 기관은 포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임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운영규정 준수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제8조 (회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탈퇴 및 제명) ①포럼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탈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1년 이상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포럼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포럼의 준비와 사업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기 운영위원은 발족 포럼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2기 이후 위원은 홀수년 마지막 포럼에서 만장일치로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④결원으로 인한 새로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및 포럼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포럼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시 운영위원의 제안으로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행사별 참가비 및 자발적 모금
2.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후원금

제16조 (회계 및 관리) 포럼의 회계 사무는 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부칙

운영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인권도시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목적

- ‘부산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를 목적으로 2020년 3월 6일 시의회에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구성

- 최영아 의원(대표), 구경민 의원, 김광모 의원, 김혜린 의원, 도용희 의원, 이정화 의원

□ 활동

- 연구포럼 추진 : <부산인권정책포럼>과 2020년 3차 포럼 공동 개최
- 연구과제 진행 중
 - 자치법규상 차별적 및 인권침해적 용어 정비
- 연구프로젝트 진행 중
 - 인권과 행정이 만나다 - 부산형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메 모
